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19가합504908 판결 [보증금반환 청구]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상현

피 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진

변 론 종 결 2021. 7. 16.

판 결 선 고 2021. 11.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11. 2. 설립되어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2. 4. 18. 설립되어 국내외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발행 주식 5,352,513주(발행주식 총 수의 10.12%)를 보유한 D의 최대주주였고, 원고는 2018. 9. 2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D 발행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기 위하여 사전 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 양도양수를 위한 이행약정서

피고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코스닥 상장법인 D의 양도양수를 위한 사전 약정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D 주식 5,352,513주와 경영권을 원고 혹은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양수하는데 따른 제반 권리/의무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사를 위한 이행보증금)

(1) 금액 : 10억 원

(2) 입금계좌 :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3) 실사기간 : 2018. 9. 28. ~ 2018. 11. 30.

(4) 실사장소 : D 본사

(5) 단, 실사는 대상회사의 반기감사 종료 후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이행보증금의 계약금 전환)

실사 종료 후 이행보증금은 본 계약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4조(약정해제)

피고가 실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본 약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 원고는 2018. 9. 21. 이 사건 이행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다.라. 한편,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199)가 2019. 11. 28. 개시되어 관리인 B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가, 이후 위 회생절차가 2021. 4. 9. 종결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다시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이행약정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이행약정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행보증금 10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 F가 2019. 2. 12. 경영참여 목적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D의 신주를 인수하여 D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D의 경영권을 상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의 최대주주 지위와 경영권을 상실하여 원고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경영권 양수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이행약정 역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해제 주장은 이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10억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분1) 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인 2019. 4.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항변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G 조합(이하 'G조합'라 한다)은 2018. 7. 25.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발행하는 액면금 94억 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8. 7. 25. 인수자금이 부족한 G조합의 사무관리자로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15억 원을 빌려 전환사채 인수대금에 충당하였다. 원고는 차용금 15억 원 중 10억 원을 변제하면서 H가 변제금 수령자로 지정한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는데, 마치 실사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이행약정을 형식적으로 체결하고 실사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가 원고에게 15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H가 원고에게 15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나머지 점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H가 원고에게 15억 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비롯한 아무런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H가 금융거래내역으로 차용증을 대신할 생각이었다면, H 명의로 원고에게 15억 원을 입금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도, H는 G조합 명의로 위 돈을 입금하였다.

③ H가 원고에게 15억 원 중 나머지 5억 원의 변제를 요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원고는 G조합로부터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수령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행보증금 몰취 항변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이행약정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실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가 지급한

이행보증금을 물취하였다. 따라서 이행보증금 10억 원은 피고에 귀속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이행약정은 이행보증금의 물취에 관하여 정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행약정이 정한 실사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실사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행보증금을 물취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대여금채권 상계 항변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H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15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피고가 양수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행보증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가 원고에게 15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H가 원고에게 15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상계 항변은 나머지 점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석, 판사 박상인, 판사 김태진

1) 원고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지급명령 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원고의 신청에 따라 소송절차로 전환되었고, 지급명령신청서는 소장 부분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